



보건실운영 규정

제 정 일	2013. 8. 1
개 정 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학생서비스과

제 1조 (명칭 및 목적) 본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보건실(이하 “보건실” 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시설) 보건실은 본교 내에 설치하고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.

제 3조 (자격)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한다.

제 4조 (업무) 보건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상담
2. 간단한 외상치료
3.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
4. 보건통계 작성 및 관리
5. 보건교육 및 홍보
6. 복정체전 등 실외행사 시 의무지원
7. 헌혈홍보 및 금연홍보 활동
8. 기타 보건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 5조 (치료) ① 응급 1차 처치를 한계로 하며, 의사 지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보건일지에 상담 및 투약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.

제 6조 (재정) 보건실의 재정은 학교예산으로 한다.

제 7조 (개방시간) 보건실의 개방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하며 총장의 재가를 받아 조정 할 수 있다. 다만,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무한다.

제 8조 (관리) 학생처의 관리를 받고 보건실 제반업무 및 보건관리의 책임은 보건실 담당자가 진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